

지방재정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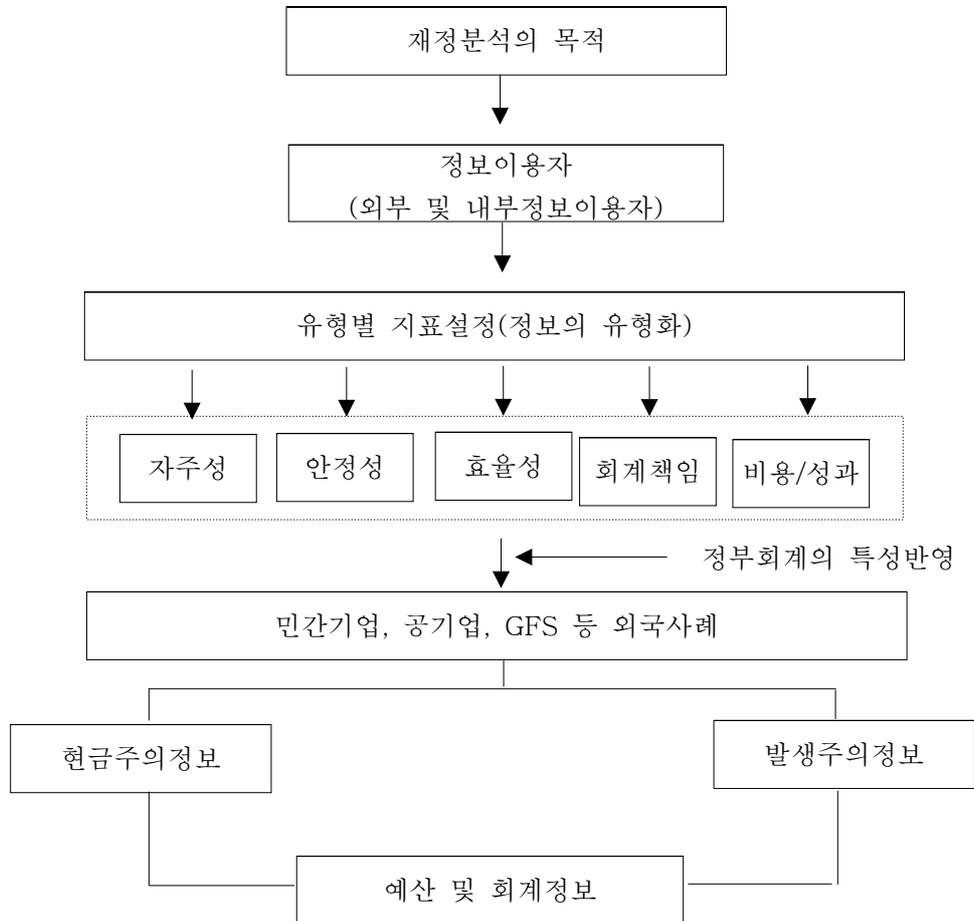
3. 복식부기차원에서 지방재정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1. 지방재정분석지표 풀(pool)의 개발방향

1) 지표 풀(pool) 개발의 기본방향

- 미래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고려
-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재정분석의 방향 정립
-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고려
- 거시적 관점에서는 정보의 유용성, 책임성,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분석지표를 설정하고자 함
 - 업무량이 과다하게 추가되지 않도록 재무제표를 기초로 가능한 지표
 - 현행 재정분석 방식과 복식부기 재정분석 방식의 상호 보완
 -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특성 등의 차이 고려

2) 재정분석지표의 설정체계



3) 지방재정분석에 적합한 지표의 선정

-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시 적용가능한 지표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2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제1단계에서는 현행 지방재정진단지표와 기업의 경영분석지표, 선행연구 및 주요 외국을 벤치마킹한 지표들을 검토하여 선정대상지표풀(pool)을 구성함
- 제2단계에서는 선정된 지표를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기능별·성질별),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선정된 지표의 경제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분석함
- 제약요건으로서 최종 선정하는 지표의 수는 필수적인 성격의 지표로 한정하여 15개 이내로 함

- 지방재정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의 선정을 위하여 먼저 각 지표를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회계책임, 비용 및 성과 지표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분석대상지표로는 현행 지방재정진단지표, 기업회계경영분석지표, 기타 지표 등 총73개 지표를 대상으로 하고자 함
- 현행 현금주의·단식부기체제하에서의 재정분석지표는 30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이중 계량지표는 25개임
- 기업회계경영분석지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것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되는 지표임. 이들 기업경영분석지표는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및활동성지표 등 크게 3가지 종류의 지표로 구분되며 총 14개의 세부경영지표로 구성됨
- 기타 지표는 선행연구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을 벤치마킹한 지표로서 총 47개의 세부경영지표로 구성됨

2. 지방재정분석지표의 선정

1) 분석지표 선정기준

- 앞에서 살펴 분석지표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적용가능성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표산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한지의 여부
- 둘째, 정부회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보인지의 여부
- 셋째, 기존 지표와의 관계로서 다른 지표와의 중복성 여부 및 적용 시 항목수정의 필요성 여부

2) 선정기준의 적용

- 기업회계의 경영분석지표 중 새로 도입된 복식부기시스템에서 직접 산출 가능한 지표로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총자산증가율, 자산회전율 등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부채비율과 총자산증가율이 공공회계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나머지 지표들은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특성 차이로 인해 정보의 산출이 어려움

○ 이에 관한 사항을 지표별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대분류	세부지표	산출정보	필요정보의 이용 가능성 여부	정부회계의 특 성상 경제적 유 용성 여부
안정성 (4)	유동비율	유동부채 상환능력	○	×
	부채비율	자본구조의 안정성	○	○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에 의존정도	○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율	영업이익이 타인자본의 충당정도	×	×
효율성 (2)	자산회전율	자산관리효율성 정도	○	×
	총자산증가율	전년대비 총자산증가 정도	○	○
비용 및 성과 (8)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로부터 이익을 얻는 정도	×	×
	매출액순이익율	매출로부터 순이익을 얻는 정도	×	×
	총자산수익율	총자산이용으로 얻는 순이익 정도	×	×
	자기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의 성과정도	×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조달 정도	×	×
	매출액증가율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 정도	×	×
	영업이익증가율	전년대비 영업이익 증가 정도	×	×
	당기순이익증가율	전년대비 순이익 증가 정도	×	×

주: ○는 가능성, 유용성 등이 있음을 의미. ×는 가능성, 유용성 등이 없음을 의미

□ 기타 지표 중 재정의 자주성과 관련된 지표는 자체조달수익비율, 지방세 수익비율, 경상세외수익비율, 주민1인당지방세수익, 주민1인당경상세외수익, 정부간이전수익비율이 있음

○ 정보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자체조달수익비율, 지방세수익비율, 경상세외수익비율, 정부간이전수익비율 등이 문제가 없으나, 경제적 중요성 측면에서 자체조달수익비율과 지방세수익비율이 지표로서 의의가 있음

○ 이에 관한 사항을 지표별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세부지표	산출정보	필요정보의 이용 가능성 여부	정부회계의 특성상 경제적 유용성 여부
자체조달수익비율	수익구조의 자주성 정도	○	○
지방세수익비율	총수익 중 지방세수익의 비중	○	○
경상세외수익비율	총수익 중 경상세외수익의 비중	○	×
주민1인당지방세수익	세입구조의 자주성 정도	×	×
주민1인당경상세외수익	세외수입구조의 자주성	×	×
정부간이전수익비율	총수익 중 의존정도	○	×

기타 지표 중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는 매우 다양한데, 이들 지표들 중 일부는 정부회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생성에 문제가 있으며, 일부는 공공회계의 특성상 경제적 유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관한 사항을 지표별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세부지표	산출정보	필요정보의 이용 가능성 여부	정부회계의 특성상 경제적 유용성 여부
총수지비율	재정수지관리의 효과성 정도	○	×
경상수지비율	의무적 성격의 지출을 경상경비로 충당하는 정도	○	○
지방채상환비율	총수익에 대한 채무부담 정도	○	×
1인당채무부담액	주민1인당 채무부담 정도	×	×
부채잔액지수	총수익에 대한 부채 정도	×	×
지방채수익비율	총수익에 대한 기채발행 정도	×	×
경상적자비율	총수익에 대한 경상적자 정도	○	×
유동부채비율	총부채 중 유동부채의 정도	○	×
고정부채비율	총부채 중 고정부채의 정도	○	×
당좌비율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정도	○	×
순자산비율	총자산 중 순자산의 정도	○	×
이자보상비율	지방세수익으로 이자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정도	○	×
기본재산비율	순자산 중 1년이내에 변제해야하는 부채의 정도	○	×
유동자산비율	총자산 중 1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의 정도	○	×
고정자산비율	총자산 중 고정자산이 차지하는 정도	○	×
현금수지비율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차이정도	○	×

기타 지표 중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정보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금융비용부담률, 고정자기적합율, 순자산증가율의 경우 정부회계의 특성상 경제적 의미의 유용성이 미흡함

이에 관한 사항을 지표별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세부지표	산출정보	필요 정보의 이용가능성 여부	정부회계의 특성상 경제 적 유용성 여부
주민1인당투자액	주민1인당 자본형성을 위해 투자한 정도	×	×
금융비용부담률	이자비용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정도	○	×
고정장기적합율	고정부채와 순자산이 고정자산에 투입되고 있는 정도	○	×
순자산증가율	당해연도에 순자산증가 정도	○	×

- 기타 지표 중 회계책임과 관련된 지표는 대부분의 지표가 생성가능하며 정부회계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수익증감율, 자체조달이익증감율, 비용증감율, 경상비용증감율 등의 지표가 정보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회계에서도 잉여금에 대한 정보는 생성될 수 있으나 정부부문에서의 잉여금은 민간부문의 그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산출될 경우 오류의 소지가 있어 이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관한 사항을 지표별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세부지표	산출정보	필요 정보의 이용가능성 여부	정부회계의 특성상 경제 적 유용성 여부
수익증감율	총수익 증감 정도	○	○
자체조달수익증감율	자체조달수익 증대 노력 정도	○	○
비용증감율	총비용 증감 정도	○	○
경상비용증감율	경상비용 절감 정도	○	○
잉여금비율	총수익에서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	×
주민1인당수익	주민1인당 총수익 정도	×	×
공무원1인당수익증감율	공무원 1인당 수익 정도	×	×
총자산잉여금 비율	총자산에 대한 잉여금 정도	○	×

- 비용 및 성과와 관련된 지표로서 정보의 이용가능성과 정부회계의 특성상 경제적 유용성을 고려할 때, 미수자체조달이익증감율, 경상비용비율, 인건비비율, 감가상각률 등이 유의미한 지표로 판단됨
- 이에 관한 사항을 지표별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세부지표	산출정보	필요 정보의 이용가능성 여부	정부회계의 특성상 경 제적 유용 성 여부
미수자체조달수익증감률	미수금과 미수세금이 징수된 정도	○	○
경상비용비율	재정운영의 경직성 정도	○	○
인건비비율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정도	○	○
감가상각률	자산의 감가상각 정도	○	○
공무원1인당인건비증감률	공무원 1인당 인건비의 증가 정도	×	×
지방세대손율	징수가능성이 없는 지방세의 처리정도	×	×
채납세액비율	지방세중 채납세의 정도	×	×
채납세증감률	채납세의 증감정도	×	×
주민1인당비용	주민1인당 비용지출한 정도	×	×

3) 적용가능 지표 요약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현행 지방재정진단지표군 25개, 기업경영분석지표군 14개, 기타 지표군 44개 총 83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정보의 이용가능성, 공공회계의 특성상 생성가능성, 타 지표와의 중복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지표로서 최종 선정된 지표 총 13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지표수	대상	지표명
자주성 (2개)	2개	기타 지표	자체조달수익비율, 지방세수익비율
안정성 (2개)	1개	기업경영분석지표	부채비율
	1개	기타 지표	경상수지비율
효율성 (1개)	1개	기업경영분석지표	총자산증가율
회계책임 (4개)	4개	기타 지표	수익증감율, 자체수익증감률, 비용증감율, 경상비용증감률
비용 및 성과 (4개)	4개	기타지표	미수자체조달수익증감율,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 감가상각률
합계	총13개		

3. 선정된 지표의 세부내역

1) 자주성 지표

가. 자체조달수익비율

지표성격

○ 자체조달수익비율은 총수익에서 자체조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수익구조가 안정되고 자주성이 높음을 의미함

산식

$$\text{자체조달수익비율} = \text{자체조달수익}^* / \text{총수익} \times 100$$

* 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 임시세외수익

나. 지방세수익비율

지표성격

○ 지방세수익비율은 총수익에서 지방세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익에 기초한 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높음을 의미함

산식

$$\text{지방세수익비율} = \text{지방세수익} / \text{총수익} \times 100$$

2) 안정성 지표

가. 경상수지비율

지표의 성격

○ 경상수지비율이란 경상적으로 수입되는 경상수익으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경상경비를 충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함

○ 이 지표는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수익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의 안정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음

현금주의회계와의 차이

- 기존 현금주의회계에서도 경상수지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재원결산액과 경상경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음
- 이 경우 일반재원에는 세외수입이 모두 포함되나 복식부기회계에서는 세외수익을 경상과 임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복식부기회계에서는 일반재원이 아닌 경상수익 대 경상경비를 비교하게 됨
- 이 외에도 복식부기회계와 현금주의회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례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이를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만큼 자산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지출로 인식하게 되지만 복식부기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게 됨. 이러한 항목으로는 융자금, 출자금, 이자비용 등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항목은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조정이 이루어진 항목이라는 점에서 산식을 구성할 때 조정 대상은 아님
- 조항목
 - 현행 현금주의회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경상수지비율 산정방식 중 분모인 일반재원결산액을 경상수익으로 대체하며 이 경우 세외수입 중 경상세외수익만을 포함함

□ 산식

$$\text{경상수지비율} = \text{경상비용}^* / \text{경상수익}^{**} \times 100$$

* 경상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정부간이전비용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수익+국고보조금수익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나. 부채비율

- 지표의 성격
 - 부채비율은 재정상태보고서상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지표임
- 현금주의회계와의 차이점
 - 지방채와 관계있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현금주의회계와의 차이점은 부채

와 감채기금간의 관계임. 즉 감채기금은 부채의 상환을 목적으로 적립함으로써 장래에 부채에서 차감될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이를 부채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도 이를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감채기금을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하지 않고 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실제 부채액을 과대평가하게 되어 정확한 산출정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재무제표의 분석 시 부채관련지표의 산식에 감채기금액 만큼 차감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외에 현금주의회계에서는 부채항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선수수익, 미지급금, 예수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로 인해 현금주의회계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항목은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채항목에 당연히 포함될 내용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조정항목이라고 볼 수 없음

□ 조정항목

- 부채비율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에서 자기자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총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보다 합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은 자치단체 소유 자산이나 이용자가 일반주민이고,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불능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므로 분모의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식

$\text{부채비율} = \text{총부채} / (\text{총자산} - \text{주민편의시설} - \text{사회기반시설}) \times 100$
--

3) 효율성 지표

가. 총자산증가율

□ 지표의 성격

- 총자산증가율은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임
- 이러한 총자산증가율은 당기말총자산을 전기말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후 100을 차감하여 순수한 증가율을 구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분석하는 지표임
- 현금주의회계와의 차이점
 - 총자산증가율은 회계실체가 투하된 총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해 회계실체의 전체적인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임
 - 일반적으로 총자산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활발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현재의 경영성과 또는 미래성과에 대한 전망이 양호하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총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행정활동과 투자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행정서비스성과의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자산증가율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로서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발생주의 회계에서만 산출이 가능함
- 조항목
 - 공기업과 같이 자산재평가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총자산증가율 산정시에는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을 차감한 순증가분만을 반영하여 비율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제도에서는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 산식

$$\text{총자산증가율} = (\text{기말총자산} - \text{기초총자산}) / \text{기초총자산} \times 100$$

4) 회계책임 지표

가. 수익증감률

지표의 성격

- 전년도와 당해연도간의 총수익을 비교함으로써 연도간 수익의 증감상황을 나타내며 지표값이 높을수록 회계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식

$$\text{수익증감률} = (\text{당해연도 총수익} - \text{전년도 총수익}) / \text{전년도 총수익} \times 100$$

나. 자체조달수익증감률

지표의 성격

- 자체조달수익증감률은 자체조달수익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분석지표로 당해연도 자체조달수익에서 전년도 자체조달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전년도 자체조달수익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익증수노력이 좋은 것을 의미함

산식

$$\text{자체조달수익증감률} = (\text{당해연도 자체조달수익} - \text{전년도 자체조달수익}) / \text{전년도 자체조달수익} \times 100$$

다. 비용증감률

지표의 성격

- 전년도와 당해연도간의 총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연도간 비용의 증가상황을 나타내며 지표값이 낮을수록 회계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식

$$\text{비용증감률} = (\text{당해연도 총비용} - \text{전년도 총비용}) / \text{전년도 총비용} \times 100$$

나. 경상비용증감율

지표의 성격

- 경상비용증감율은 경상비용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출분석지표로서 당해연도 경상비용에서 전년도 경상비용을 차감한 금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비용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낮을수록 경상경비의 절감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함
- 경상비용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성격의 비용으로서 경상비용증감률이 낮을수록 비용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산식

$$\text{경상비용증감률} = \frac{(\text{당해연도 경상비용}^* - \text{전년도 경상비용})}{\text{전년도 경상비용}} \times 100$$

* 경상비용 항목 = 인건비+운영비+정부간이전비용

5) 비용 및 성과 지표

가. 미수자체조달수익증감율

지표의 성격

- 미수자체조달수익이란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의 합으로 미수자체조달수익증감율은 당해연도 미수자체조달수익에서 전년도 미수자체조달수익을 차감한 값을 전년도 미수자체조달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함
- 따라서 미수자체조달수익증감율이 낮을수록 미수자체조달수익에 대한 회수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함

산식

$$\text{미수자체조달수익증감율} = \frac{(\text{당해연도 미수자체조달수익}^* - \text{전년도 미수자체조달수익})}{\text{전년도 미수자체조달수익}} \times 100$$

*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 + 미수세외수입금

나. 경상비용비율

지표의 성격

- 경상비용비율은 총비용 중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지표로서 경상비용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경직도

가 높고 그만큼 재정운영이 방만하다고 볼 수 있음

산식

$$\text{경상비용비율} = \text{경상비용}^* / \text{총비용} \times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정부간이전비용

다. 인건비비율

지표의 성격

- 인건비 비율은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인건비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성과가 높다고 볼 수 있음

현금주의회계와의 차이점

- 현금주의회계에서도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지표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서의 인건비 항목과 복식부기제도상의 인건비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또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다른 결과가 도출됨

산식

$$\text{인건비비율} = \text{인건비} / \text{총비용} \times 100$$

라. 감가상각률

지표의 성격

- 감가상각률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고정자산의 회수가 빠름을 나타냄

- 따라서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률이 높을 경우 상대적 성과의 저하를 의미하게 됨

현금주의회계와의 차이점

- 감가상각비는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발생주의회계의 과목이라는 점에서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정보임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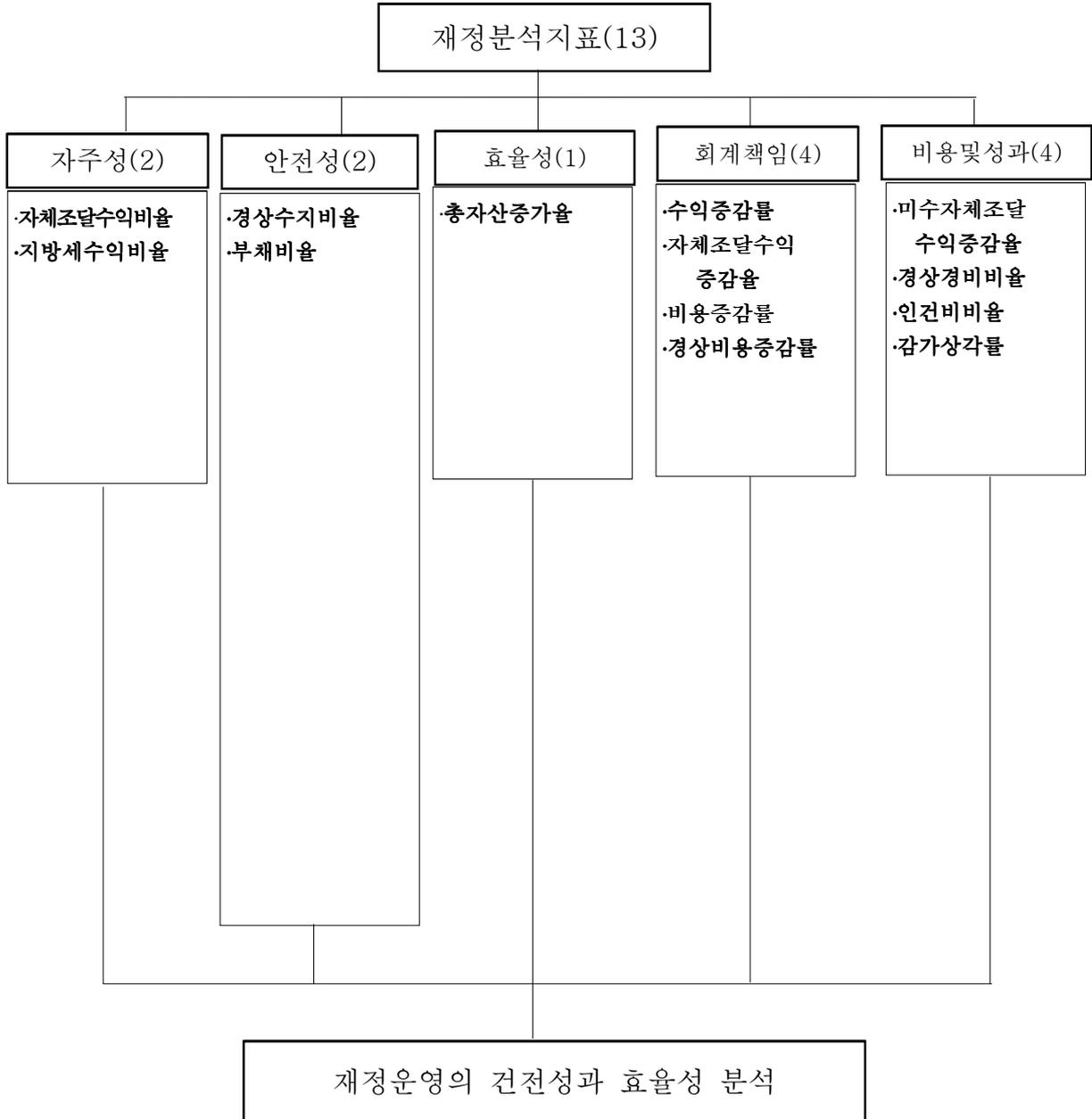
$$\text{감가상각률} = \text{감가상각비} / \text{감가상각자산} \times 100$$
 감가상각자산 : (일반유형자산-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비상각자산
 비상각 자산 : 토지, 도로, 입목, 하천부속시설 등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지방재정분석지표 종합>

유형(총13개)	지표명	산식
자주성 (2개)	자체조달수익비율	자체조달수익/총수익 ×100
	지방세수익비율	지방세수익/총수익 ×100
안정성 (2개)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 100
효율성 (1개)	총자산증가율	(기말총자산-기초총자산)/기초총자산 × 100
회계책임 (4개)	수익증감률	(당해연도 총수익-전년도 총수익)/전년도 총수익 × 100
	자체조달수익증감률	(당해연도 자체조달수익-전년도 자체조달수익)/전년도 자체조달수익 × 100
	비용증감률	(당해연도 총비용-전년도 총비용)/전년도 총비용 × 100
	경상비용증감률	(당해연도 경상비용-전년도 경상비용)/전년도 경상비용 × 100
비용 및 성과 (4개)	미수자체조달수익증감율	(당해연도 미수자체조달수익-전년도 미수자체조달수익)/전년도 미수자체조달수익 × 100
	경상비용비율	경상비용/총비용 × 100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 × 100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비/감가상각자산 × 100

<발생주의 재정분석체계도(제1안)>



4. 재정분석체계의 대안

- 위에서 제시한 재정분석체계에 대해서 ‘회계책임’이란 개념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효율성’과 ‘비용및성과’의 개념간에도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함
-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자주성과 안전성을 재정건전성 차원의 세부유형으로 하고, 노력성과 생산성을 재정효율성 차원의 세부유형을 두는 안
- 이 안을 따를 때 ‘회계책임’유형은 ‘노력성’유형으로 수정하고, ‘효율성’유형은 ‘비용및성과’유형과 합쳐져 ‘생산성’유형이 됨

건정성		효율성	
자주성	안전성	노력성	생산성

- 이러한 안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발생주의 재정분석체계도(제2안)>

